

##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및 제6조 중 “지방농업연구관”을 “지방가축위생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중부지소의 지소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사 또는 지방수의 주사로 보한다.

제6조제4항 중 다음을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	충주시 금릉동 137 - 12	충주시 · 음성군 일원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	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9	보은군 · 옥천군 · 영동 군 일원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 재천지소	제천시 고암동 145 - 30	제천시 · 단양군 일원
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	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709	진천군 · 괴산군 일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0월 25일부터 적용한다.